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6

제출년월일 : 2026.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센터의 행정사무를 명확히 하고, 수강료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 관리·운영 위탁 근거의 명확화(안 제49조제5항)

나. 수강료 명시 및 기준 신설(안 제53조제1항,제2항, 별표 1, 별표 2)

다. 현행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6조제1항제4항, 제54조제5호)

라. 위원의 성별 구성 및 회피규정 의무화(안 제8조제1항, 제12조제6항～제8항)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4)「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3. 5. ~ 3. 25.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한 경우이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최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제6항제1호 중 “해당”을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로, “이해관계가”를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해당 안건의 관계자”를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34조 중 “지원을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조례와”를 “조례·규칙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센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3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을 “사용료와 센터 강좌 등 수강에 따른 수강료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제5호 중 “수용자”를 “시설 거주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취소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5조제3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53조 관련)

1. 사용료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세미나실	1시간	25,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사용 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기준금액을 가산함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일반강의실Ⅰ	1시간	20,000원	
일반강의실Ⅱ	1시간	15,000원	
일반강의실Ⅲ	1시간	10,000원	

2. 수강료

연번	구 분	내 용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1	취창업 프로그램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1회	5,000원	○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2	의식향상 프로그램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3	문화여가건강 프로그램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기타 프로그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5	특강 공개 프로그램	전문가에 의해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는 공개 교육	무료		

※ 1~4번까지의 수강료는 월 프로그램 운영 횟수에 비례하여 계산

※ 프로그램별 회차는 프로그램 계획 및 성격 등에 따라 사업별로 변동될 수 있음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54조 관련)

대 상	감면비율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55조제2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반환사유 발생일</th><th>반환금액</th></tr>
<tr><td colspan="2">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td><td>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td><td>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td></tr>
<tr><td rowspan="6">제55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td><td rowspan="4">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td><td>수업시작 전</td><td>수강료 전액</td></tr>
<tr><td>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가기 전</td><td>수강료의 2/3 해당액</td></tr>
<tr><td>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가기 전</td><td>수강료의 1/2 해당액</td></tr>
<tr><td>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td><td>반환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2">나.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td><td>수업시작 전</td><td>수강료 전액</td></tr>
<tr><td>수업시작 후</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td></tr>
<tr><td colspan="2">비고</td><td colspan="2">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8조(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② (생 략)	제12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긴급한 경우이거------------------------ ----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개의하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⑥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단서 신설>	--.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
2. 삭　제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신　설>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⑦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위원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현행과 같음) ② --- 않고---.
제34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자원봉사활동 지원) -- 지원할 --------.
제36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ㆍ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6조(성별영향평가) ① --- 조례ㆍ규칙과 ---.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 업무 담당국장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위탁) ①·② (생 략)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신 설>	제49조(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⑤ 그 밖에 센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3조(사용료) ① 제51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 사용료와 센터 강좌 등 수강에 따른 수강료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54조(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 1. ~ 4. (현행과 같음) 5. ------------------------

현행	개정안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설 거주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만,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취소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 별표 3--.

<별표1>

사용료 징수 범위(제53조 관련)

구　분	단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세미나실	1시간	25,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1시간 이내 초과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가산함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일반강의실 Ⅰ	1시간	20,000원	
일반강의실 Ⅱ	1시간	15,000원	
일반강의실 Ⅲ	1시간	10,000원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53조 관련)

1. 사용료

구 분	단위	기준금액	비 고
세미나실	1시간	25,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사용 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기준금액을 가산함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일반강의실Ⅰ	1시간	20,000원	
일반강의실Ⅱ	1시간	15,000원	
일반강의실Ⅲ	1시간	10,000원	

<별표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대상	감면 비율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50%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10%	

2. 수강료

연번	구 분	내용	단 위	기준 금액	비고
1	취창업 프로그램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1회	5,000원	○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2	의식향상 프로그램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3	문화여가건강 프로그램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기타 프로그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5	특강 공개 프로그램	전문가에 의해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는 공개 교육	무료		

※ 1~4번까지의 수강료는 월 프로그램 운영 횟수에 비례하여 계산

※ 프로그램별 회차는 프로그램 계획 및 성격 등에 따라 사업별로 변동될 수 있음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54조 관련)

대상	감면 비율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대상	감면 비율	비고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 (제55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55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가기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가기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55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5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가기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가기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김민경
연 락 처	02-3153-8923